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91

발의연월일: 2025. 5. 7.

발 의 자:차규근・황운하・강경숙

서왕진 · 김준형 · 신장식

박은정ㆍ김남희ㆍ정춘생

이해민 · 김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	
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u>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u>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	관계인
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	
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